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조례(안)

심 사 보 고

농림수산위원회

1997. 4. 21.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7년 4월 7일
- 회부일자 : 1997년 4월 7일

다. 상정 일자 : 제136회 임시회

- 제3차농림수산위원회(1997. 4.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촌진흥원장 이 상 석)

가. 제안 이유

지금까지 민간 의뢰의 비료·농약·토양 등에 관한 시험,분석,검정을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위탁 규칙에 의해 업무를 수행 하던 것을 '97년부터 도농촌진흥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농업에 관련한 시험, 분석, 검정에 관한 민원업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조례명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로 함
- 시험,분석 및 검정에 관한 용어 정의와 시험 의뢰 절차, 시험기간을 정함 (제1,2,3,4조)

- 시험 등에 대한 업무 절차와 시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 기구가 진흥원에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기계, 기구를 제공 할 수 있게 함 (제5,6조)
- 시험 등의 의뢰를 거절 할 수 있는 규정과 임의로 거절 할 수 없도록 함 (제7조)
- 시험 등을 마친 후 결과 통지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규정 (제8,9조)
-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자가 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대한 결과 표시 등의 제안 (제10조)
-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시험의 의뢰에 대한 경비 납부 명시 (제1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응)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농업인과 민원인의 의뢰에 의하여, 비료, 농약, 토양 등에 관한 시험을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위탁 규칙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 하던 것을 금년부터 도농촌진흥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로 정하고 시험·분석·검정을 위한 의뢰 절차, 신청 절차,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고, 시험기계 및 기구의 제공 및 반환, 시험 등을 거절 할 수 있는 내용과 시험 결과에 따른 통지 및 성적증명서 발급, 결과표시 등을 정하였으며, 별표에는 처리절차, 수수료, 시험정비,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농촌진흥청의 규칙에 의하여, 도농촌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시험·분석·검정 업무를, 지방직화에 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지방화 및 지역 농업의 발전과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본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 1부
- 관련법규사본 1부 “끝”